

1. 개정이유

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보증서 제출 유예제도는 일몰법령으로서 '23년 말 종결 예정이나, 조선소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보증유예제도 일몰 시 상당한 재정부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(안 제6조의2)

- 1) 2017년부터 경기침체기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서 사본 제출 시 착·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
- 2)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 시기를 2년 연장하여 중소 조선소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,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4년 1월 2일”을 “2026년 1월 2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2(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)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<u>2022년 12월 31일</u>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	제6조의2(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2월 31일</u>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<u>2024년 1월 2일</u> 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1월 2일</u>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